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9. 3. 12
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2월 20일, 충청북도지사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2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('99. 3. 12)
질의·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)

가. 제안이유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 마련
 -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(안 제1조)
 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산출 (안 제2조 제1항)

○ 용어의 정비

- 현장조사 및 시험 →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 (안 제2조 제2항)
-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 →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 (안 제4조)
- 공용조사 및 시험 →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 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이는 1997. 8. 25 건설교통부령 제115호로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 주요 골자는,

첫째,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하고

둘째, 용어의 정비에 있어

안 제2조 제2항, 제4조, 제5조를 모법과 동일한 용어로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,

다만 안 제3조 (징수방법) 제1항중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로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항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일부 조항중 민원인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바로잡아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

안 제3조(징수방법) 제1항중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로 함.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의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붙 임

가.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다. 조문대비표